

www.i-sh.co.kr

청렴 청신호, 부패 적신호

2022년 1차 희망하우징(공공기숙사)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2022.05.04.

 서울주택도시공사

- **희망하우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잔여세대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공고입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2.05.04.(수)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최초 입력한 연락처 및 주소로 안내문을 전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및 주소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

공 급 개 요

■ 공급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사전 주택공개	인터넷 청약접수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입주
22.05.04. (수)	22.05.11.(수) ~05.13.(금)	22.05.18.(수) ~05.20.(금)	22.05.30.(월) ~06.01.(수)	22.08.12. (금)	22.08.22.(월) ~08.24.(수)	22.09.05.(월) ~11.03.(목)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터넷 신청접수 : 2022.05.18.(수) 10:00 ~ 2022.05.20.(금)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2.05.24.(화) 예정

※ 서류제출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정, 등기우편 제출

※ 서류심사 및 소득·자산 조회(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약 6~7주 소요

※ 주택소유·소득·자산 소명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예정

■ 공급대상 : 희망하우징(공공기숙사) 잔여세대 8호

※ 공급주택 상세목록은 [첨부]주택목록 참고

주택명	소재지	주택유형	전용 면적	성별	공급 호수
합 계		원룸형		남성	4
				여성	2
		쉐어형 (2인실)		남성	2
연남 공공원룸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7길 79 (연남동 487-35)	원룸형	13.4m ² ~14m ²	남성	4
			13.4m ²	여성	2
정릉 희망하우징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199 (정릉동 380-3)	쉐어형 (2인실)	7.1m ²	남성	2

□ **연남 공공원룸텔**

- 호실형태 : 원룸형(1호 1인)
- 전용면적 : 13.4㎡~14㎡
- 공급호실 : 6호 (여2, 남4)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7길 79
- 인근 지하철역 : 경의중앙선 가좌역, 2호선 홍대입구역
- 인근 대학교 :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명지대학교

□ **정릉 희망하우징**

- 호실형태 : 쉼어형(1호 2인)
- 전용면적 : 7.1㎡
- 공급호실 : 쉼어형 2호(남2)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199
- 인근 지하철역 : 우이선경전철 북한산보국문역(서경대), 4호선 길음역
- 인근 대학교 : 서경대학교, 국민대학교, 고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 전용면적은 실제 거주하는 각 호실의 면적입니다.

※ 세대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지정되어 있으며 교차지원이 불가합니다.

※ 최초 공급 시 지정한 성별에 따라 재공급하는 것으로, 성별 간 공급 호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릉 희망하우징 주택 중 쉼어형(2인실) 공급대상 호실은 현재 1명의 입주자가 존재하는 호실로서 2년 단기임대 형태로 신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계약만료 후 재계약 불가)
단, 계약만료 이전 시점에 1인실 전환에 동의하고 원룸형 주택의 잔여공가가 있을 경우 원룸형 주택의 임대조건으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기간**

□ **계약기간 : 2년**

- 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최장 6년 거주)합니다.
- 정릉 희망하우징 쉼어형(2인실) 주택은 최초 계약기간 2년 이후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만료 이전 시점에 1인실 전환에 동의하고 원룸형 주택의 잔여공가가 있을 경우 원룸형 주택의 임대조건으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최장 6년 거주)합니다.
- 계약기간 중 퇴거 시 2년 거주로 간주하며, 이후 희망하우징 주택을 재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거주기간을 누적하여 산정(누적 거주기간 최장 6년 가능)합니다.

□ 재계약

- 무주택자(본인) 조건 및 대학생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 이후 재계약 시점에서 대학생이 휴학 중인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나, 졸업(수료) 시에는 재계약이 불가(잔여기간 거주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시중시세(감정평가액)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
- 월임대료는 전체 임대기준금액에서 임대보증금(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환이율(6.7%)로 전환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간 전환(상호전환)은 불가합니다.

주택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기타
연남 공공원룸텔	100만원	133,300원		-
정릉 희망하우징	100만원	쉐어형 (2인실)	58,100원	-

※ 임대료 외에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할센터 문의)

■ 일반사항

-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04.)**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인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복학 예정자 및 입학예정자 포함)인 자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1인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관련 세부기준

인정 대학교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기 타	※ 졸업유예(수료)자·대학원생은 대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만 대학생 기준 충족(대학원생 인정하지 않음) □ 복학예정자(입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및 각서를 제출하고 복학(입학) 후 즉시 재학증명서 제출(미제출 시 계약 취소 및 퇴거조치) □ 입학예정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로서 자격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재학 중인 학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순위 요건

순위	자 격	상세 요건
1순위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수급자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2순위	일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3순위	일반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복주택(대학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8,6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무소유)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가구원 수 별 소득금액기준

기 준		1인가구(+20%p)	2인가구(+10%p)	3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원)	50%이하	2,248,479	2,906,622	3,209,283
	100%이하	3,854,535	5,328,807	6,418,566

-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 가산,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1순위 신청자는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검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1순위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격 인정 범위는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에 한합니다.
- 2순위의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를 포함합니다.
- 3순위의 경우 1인가구 기준, 신청자 본인의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부모를 제외한 형제·자매 및 기타 가구원은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명만 가구원에 포함되어 가점사항 관련 서류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 ①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가 없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가점사항

□ 가점사항 기준

적용 대상	가점 항목	내용	배점
1 순위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인정 범위: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 세대 내 신청자의 부모	3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3
2, 3 순위	③ 소득기준 50% 이하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3
공통	④ 부모 무주택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2
공통	⑤ 타지역 출신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군 출신 (현재 신청자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2
공통	⑥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 SH,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및 대학교 기숙사, 지방자치단체 공공학사는 제외 ※ 신청자 본인이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인 경우에 한함	1
공통	⑦ 장애인(본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본인)인 경우	2
	⑧ 장애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부모 중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있는 경우	1

■ 주택공개

공개기간	□ 2022.05.11.(수) – 2022.05.13.(금) [공개시간: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개절차	□ 공개기간 중 관할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방문 희망 일시를 협의 후 해당주택을 방문해야 합니다.(개별 임의방문 불가) ※ 정릉 희망하우징의 경우 관리사무소로 유선 연락하여 방문 일시 협의 후 방문 가능 □ 관할센터 및 관리사무소 연락처 : 「추가 안내」 참고
유의사항	□ 주소지에 따라 내부 상태 및 주변 여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동호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주택 공개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인터넷 청약)

기간	□ 2022.05.18.(수) 10:00 – 2022.05.20.(금) 17:00
방법	□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 인터넷 청약 시스템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단지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입력 → 공동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유의사항	□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금융기관(인터넷뱅킹) 및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인증서로 인증 가능합니다. □ 주소지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됩니다. □ 청약접수 시 도로명 주소 사용을 권장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연락처 입력이나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 완료(저장)하여야 하며, 최종 확인 완료 시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마감 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번호 및 신청 내역 등을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 서류심사대상자에게 별도 등기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 및 신청 접수 시 기입한 연락처로 문자(SMS)를 발송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일시	□ 2022.05.24.(화) 예정
	방법	□ 문자(SMS) 전송 및 홈페이지(공지사항) 명단 게시(등기 안내문 발송×) □ 홈페이지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ARS 조회
	선정기준	□ 신청 시 기입한 사항을 바탕으로 공급호수의 6배수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음 전형을 진행합니다. □ 순위 간 경쟁이 있을 시 상위순위를 우선 선정하며, 6배수 내 동순위 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당순위 신청자는 별도의 추첨 없이 모두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서류제출	기한	□ 발송: 2022.05.30.(월) - 2022.06.01.(수) 이내 소인 분 인정 □ 마감: 2022.06.03.(금) 도착 분까지 인정
	방법	□ 등기 우편 제출(방문제출, 일반우편 제출 불가)
	주소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희망하우징 담당자 앞
	유의사항	□ 등기우편 외의 방법(일반우편 포함)으로 접수 불가하며 제출 기간 이외 소인 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별도 안내 없이 탈락) □ 서류심사대상자의 서류제출이 없더라도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 서류 부족 제출자의 경우 신청 시 기입한 본인 연락처로 전화 1회, 문자 1회 발송 후 연락 불가 시 탈락 처리합니다. □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 □ 공급부서를 제외한 콜센터, 관할센터 등을 통한 전화 상담은 참고 사항이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격조건 및 해당서류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 서류심사 시 결격 처리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발급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접수기간 이후 순위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후 반납하지 않음
(탈락자 서류는 전형 종료 후 일괄 폐기)

공통 제출서류

□ 신청자 전원 제출

제출 서류	내 용	발 급
대학생·대학원 자격증명 서류	□ 재학생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휴학생 : 휴학증명서, 공사양식 각서(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 재학증명서(복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센터 제출) □ 입학예정자 :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공사양식 각서 (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 재학증명서(입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센터 제출)	-해당교육 기관 -불임양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 (정자체)서명 □ '부모 무주택 가점', 혹은 '타지역 출신 가점' 해당자는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정자체)서명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① 부모와 세대 분리 시: 분리된 부, 모 모두 포함 ②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가 없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모든 동의 란에 체크	-불임양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상세발급	-주민센터

자격별 제출서류

□ 본인의 신청 자격(순위 및 가점)에 따른 서류 제출

해당 자격	제출서류 및 내용	발 급
(1순위)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 신청자 본인 혹은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부모에 한함	-주민센터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	-주민센터
(1순위)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본인 혹은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부모에 한함	-주민센터
2, 3순위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2순위 : 본인 및 부모의 (정자체)서명 - 3순위 : 본인의 (정자체)서명 ※ 2순위 신청자의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① 부모와 세대 분리 시: 분리된 부, 모 모두 서명 ②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가 없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붙임양식
기타 가점사항 해당자	□ 장애인(본인) 및 장애인 가구 : 장애인증명서 ※ 신청자 본인 혹은 부모에 한함 □ 타지역 출신 : 신청자 부모(모두)의 주민등록등본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센터

※ 가점사항 중 '소득기준 50% 이하', '부모 무주택자' 여부는 보건복지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추가 제출서류

□ 신청자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제출 서류	내 용 (해당자만 제출)	발 급
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	□ 부모 이혼 시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되는 부 또는 모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혼내역 표기) ※ 심사대상 부 또는 모 기준은 [신청자격] 참조	-주민센터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사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제출	-주민센터

■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소명

일 시	□ 2022. 7월 중 [소득자산 조회 회신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방 법	□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소명대상자 개별 통보 및 소명자료 등기우편 제출
유의사항	□ 소득 및 자산 소명 절차는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대상자(2~3순위)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 소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및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전산조회결과가 신청내역의 입주자격 기준을 초과한 신청자는 소명대상자로 선정되며, 전산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탈락처리 합니다.

4

입주자 선정방법 및 발표

■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추천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를 기준으로 순위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상위 순위를 우선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사항 항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 선정	□ 서류심사, 무주택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의 적격자가 최종 입주자 선정 추천의 대상이 되며, 신청자 본인이 신청한 주택 단위로 경쟁 및 입주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 당첨자의 호실배정은 신청 주택 별 전산 무작위추첨에 따라 이뤄집니다.
	예비자 선정	□ 공급호수의 2배수 내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계약취소·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예비자 자격 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2개월)

■ 최종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일 시	□ 2022.08.12.(금) 예정 [소득자산 조회 회신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방 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명단 게시 및 SMS(문자) 발송 □ 홈페이지 당첨자 조회 / ARS 조회 □ 당첨자 계약안내 서류 및 계약금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유의사항	□ 서류심사대상자 전원에게 발표 사실을 문자(SMS) 안내하며, 최종 당첨자에게는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전산 무작위추첨에 따라 배정된 호실 이외(공실여부 관계없음)로 호실 변경 입주는 불가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입주부적격사유가 있을 시 추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탈락 처리합니다.

■ 2차 주택공개(최종 당첨자 대상)

공개기간	□ 2022.08.17.(수) - 2022.08.19.(금) [공개시간: 10:00 - 16: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공개절차	□ 공개기간 중 관할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방문 희망 일시를 협의 후 해당주택을 방문해야 합니다.(개별 임의 방문 불가) ※ 정릉 희망하우징의 경우 관리사무소로 유선 연락하여 방문 일시 협의 후 방문 가능 □ 관할센터 및 관리사무소 연락처 : 「추가 안내」 참고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당첨된 주택만 확인 가능합니다. (당첨 주택 외 타 주택 방문이나 입주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개 불가) □ 주택 공개 일을 협의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일시	□ 2022.08.22.(월) - 2022.08.24.(수) [계약시간: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계약체결	□ 계약 시 구비서류(아래) 지참 후 방문계약 □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 상의 당첨자 전용 가상계좌로 계약금 납부 후 계약금 납부 증빙자료 지참하여 방문(계약 시 공사에 계약금 납부 불가)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가족이 대리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3자(대리인)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		
구비서류	계약자 본인 내방 시	① 계약자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③ 계약금납부 영수증 및 계좌이체 확인증 (인터넷 뱅킹) ④ 쾌적한 주거환경 이행 유지각서 (공사 소정양식) ⑤ 서약서 (무주택 및 당첨자격 확인 서약) ⑥ 주택사전점검표 (서명 포함)	
	직계가족 또는 제3자(대리인) 내방 시	위의 본인 내방 시 구비서류 (①~⑥) 외	직계가족 대리 시 제3자(대리인) 대리 시 ㉠ 대리인 신분증 ㉡ 계약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계약자의 인감 날인) 1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입 주

기 간	□ 2022.09.05.(월) – 2022.11.03.(목), 두 달간
안 내	□ 관할 센터에 계약사실 통보 및 입주예정 주택 정비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입주 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수령한 잔금 고지서 상의 계좌로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하며, 반드시 입주희망일 2주(14일) 이전 해당지역 관할센터로 유선 연락하여 입주일자를 협의해야 합니다. □ 금융권 대출 관련 사항은 공사에서 관여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서 별도 대출을 시행하지 않으며 대출을 위한 계약서 내용(동호 및 면적) 수정은 불가합니다.

6

추 가 안 내

■ ■ 연락처

주택명	관할 센터	전화번호
	주 소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연남 공공원룸텔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	(02)380-0100~1
	마포구 마포대로20 다보빌딩(기업은행 마포역지점) 10층	
정릉 희망하우징	성북주거안심종합센터	(02)944-8000~1
	강북구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삼양신탁본점) 11층	
	정릉 희망하우징 관리사무소	(02)909-0872

■ ■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안내

주택명	사용구분	위치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정릉 희망하우징	부대시설	4층	세탁실, 휴게실(여)
		3층	휴게실(남)
		2층	세탁실(남)
	실별 사용		에어컨, 주방(냉장고, 전기쿡탑), 화장실, 침대, 책상·의자, 옷장
연남 공공원룸텔	부대시설	1층	세탁실
	실별 사용		냉장고, 전기쿡탑, 화장실, 책상·의자, 옷장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소득재산 조사대상 가구원 전원(2순위: 본인 및 부모 / 3순위: 본인)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조사대상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소득 및 자산 출처(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 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 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자료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 산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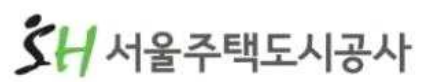
구 분	총자산 기준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 동 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에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총 자 산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개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아래의 경우는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자산	-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구 분	유 의 사 항
신 청	- 1인 1주택(실)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의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전부 탈락 처리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나 가점 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주소지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배정하고, 세대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 또는 입학 예정자의 자격으로 신청한 자는 공사 양식 각서(미제출 시 계약 취소 및 퇴거 서약) 및 재학증명서(복학 후 1개월 이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 및 자격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로 등기우편과 SMS(문자)를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에 따라 내부 상태 및 주변 여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동호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본인이 기혼자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부모님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도 소득과 자산 심사를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무주택자 요건(본인)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합니다.
서 류	-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다음 전형 진행이 가능하며, 서류미제출 탈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형 종료 후 반납하지 않고 일괄 폐기 합니다. -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 - 콜센터 및 관할센터를 통한 단순 전화 상담은 참고용이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 하고 자격조건 및 해당서류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 서류심사 시 결격 처리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소 명	- 소득 및 자산 소명 절차는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전형에 한하여 진행되며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전산조회결과가 신청내역과 다른 신청자는 소명대상자로 선정되며, 전산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탈락처리 됩니다.
발 표	-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 발표일 이전에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으며 모든 신청자의 전형 종료 후(소명 절차 등) 일괄 발표 합니다. - 공급호수의 2배수 내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계약취소·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계 약	- 최종 입주대상자라도 소득기준·자산기준·자동차기준 등의 추가 소명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완료 하여야 계약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2차 주택공개(당첨자 대상) 시 입주 대상주택을 방문하여 세대 내 시설·설비 상태에 대한 사전점검표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을 납부하고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미계약취소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제출이 필요하며, 입주지정 종료일 전까지 계약해지 신청하여야 공제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관할센터에서 신청가능) - 최초 2년 계약 후 2회 갱신계약 가능(총 6년)하며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제외한 모집공고일 현재의 입주자격(무주택자, 대학생)을 재계약 시점에도 유지하여야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 정릉 희망하우징 쉼어형(2인실) 주택 당첨자의 경우 최초 2년 계약 후 갱신계약이 불가합니다.(2년 단기임대) 단, 계약만료 이전 시점에 1인실 전환에 동의하고 원룸형(1인실) 주택의 잔여공가가 있을 경우 원룸형 주택의 임대조건으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최장 6년 거주)합니다. - 임대차 기간 중 대학교를 졸업(수료)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나 재계약은 불가합니다. - 희망하우징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현재 거주자 포함)도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하나 전체 임대차 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계약 1회 당 2년 거주 간주)

입 주	-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자 본인만 입주 가능합니다. - 본인이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희망하우징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최종 입주자 발표 후 해당자 별도 통보 및 입주 전 센터 최종 확인) - 신청자의 부모가 서울 소재의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신청자가 기존 부모 세대에서 분리하는 조건으로 희망하우징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금융권 대출 관련 문의를 받지 않으며, 공사에서 별도 대출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대출을 위한 계약서 내용(동호표기 및 면적 등) 수정은 불가합니다.
생 활	- 공동주택 특성 상 층간소음·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 및 공실로의 동호이전 등은 불가합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남녀혼숙 등 사회적 문란행위, 향정신성 의약품 음용, 상습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및 소음 발생 행위, 냄새 및 악취 발생원인 제공 행위, 동물을 키우는 행위, 도박, 친구나 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 타 입주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는 행위 등)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리비가 발생하는 주택이 있으니 계약 전 관할센터를 통해 관리비 발생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 타	- 이 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전대·알선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등 관련 법령과 고시·지침에 따릅니다.



주소 (06336)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홈페이지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